

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자격시험 시행 계획

1. 시행근거

- 가. 의료법 제77조 및 치과의사전문자격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, 제12조, 제13조
-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31호(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)

2. 시험일시 및 장소

- 가. 1차 시험 : 2022. 7. 3.(일) 10:00 ~ 12:00
* 시험장소 : 세종대학교 -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
- 나. 2차 시험 : 2022. 7. 17.(일) 10:00 ~ 11:00
* 시험장소 : 세종대학교 -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

※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 입실

※ **코로나19 감염병 영향으로 시험 취소 또는 시험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**

3. 시험과목 : 통합치의학과

4. 응시자격

가. 1차 시험 응시자격

- 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3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(과)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
- ②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3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(과)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(과)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
- ③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3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(과) 연수실무교육 300시간 이상을 2021년 12월 31일(금) 24:00까지 이수한 자

나. 2차 시험 응시자격

- ①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
- ② 전회시험(2021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자격시험) 1차 시험 합격자
- ③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31호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(과)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(과)의 수련교육을 담당한

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한 1차 시험 면제 자격을 취득한 자

5. 응시원서 교부

가. 교부기간 : 2022. 6.10.(금) 10:00 ~ 6.20.(월) 18:00

나. 교부방법 : 1)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da.or.kr>)

2)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(<http://www.kda-exam.or.kr>)

6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2. 6.10.(금) 10:00 ~ 6.20.(월) 18:00

나.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

다. 접수장소 :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

(URL : <http://www.kda-exam.or.kr>)

* 1차 시험 면제자(2차 시험 응시자)도 접수기간[2022. 6.10.(금) 10:00 ~ 6.20.(월) 18:00]에 접수하여야 함

라. 제출서류

* 세부서류준비, 작성방법 등에 대해 본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da.or.kr>) 공지사항 및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(<http://www.kda-exam.or.kr>)를 반드시 참조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마. 응시수수료 납부

*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응시료를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부시 응시원서 접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
① 1, 2차 시험 대상자 : 270,000원

② 1차 시험 면제자 : 200,000원

③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: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납부

바. 응시수수료 환불

① **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**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25

② **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**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(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)

③ **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** 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대상자로 판정(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(국가(공공기관)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)

- ④ **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**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(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)

사.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

제출 서류	제출 방법	비고
응시원서	-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	
치과의사면허증 (사본)	- 온라인 등록	
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(사본)	- 온라인 등록	※ 타과 전문의 취득자에 한함

아.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

- *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료 납부는 **온라인 응시 홈페이지(<http://www.kda-exam.or.kr>)**로만 가능합니다.
- *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접수기간 이외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응시자는 제출하는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에 문제가 있을 시 원서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이 작성·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응시원서 상의 표기의 오류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은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7. 응시표 교부

가. 1차 시험 : 2022. 6.27.(월) ~ 7. 3.(일) 12:00

- * 1차 시험 면제자는 2차 시험 응시표 교부 기간에 응시표 출력 가능

나. 2차 시험 : 2022. 7.11.(월) ~ 7.17.(일) 11:00

- * 2차 시험 대상자 응시표 출력

다. 교부방법 :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(<http://www.kda-exam.or.kr>)에서 직접 출력

8. 합격자 발표

가. 1차 시험 : 2022. 7. 6.(수) 10:00

나. 2차 시험(최종합격자 발표) : 2022. 7.26.(화) 10:00

다. 발표방법 :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(<http://www.kda-exam.or.kr>)를 통하여 발표

9. 기타

가.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면허번호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 등은 일치하여야 하며, 응시자의

성적처리는 면허번호에 의하여 전산 처리되므로 특히 응시자의 면허번호를 정확히 확인·기재하여야 합니다.

- 나. 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, 허위서류 제출, 시험업무방해,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, 시험문제지 유출 및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, 향후 2회에 걸쳐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.
- 다. 통합치의학분야(과)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, 통합치의학분야(과)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을 받아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(과) 연수실무 교육 300시간 이상 이수한 2021년 12월 31일(금) 24:00까지 이수한 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.
- 마.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(시험 과목 및 방법) 4항 :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, 2021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는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31호에 따른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효력을 가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국[Tel : 02-2024-9155]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